

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

「초지법」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·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.

2026. 7. 29.

파 주 시 장

1.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

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거 초지 지역·지구 지형도면 등 지정 고시 지역·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.

2.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

연번	초지 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(㎡)	해제면적(㎡)	해제사유
1	탄현면 법흥리	63-2	목장	7,976	7,976	초지법 제24조
2	탄현면 법흥리	63-3	목장	4,016	4,016	초지법 제24조
3	탄현면 법흥리	67-2	목장	9,678	9,678	초지법 제24조
4	탄현면 법흥리	67-3	임야	1,568	1,568	초지법 제24조

3.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

가. 지형도면 : 게재생략

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나. 도서열람 : 이해관계인은 파주시 동물관리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